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1586호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제2008-173호(2008.05.22)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4-93호(2014.12.11)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7-8호(2017.1.1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수색·증산재정비촉진지구 내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도서가 제출되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49조 규정에 의거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하고, 의견 청취하고자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19. 12. 26. ~ 2020. 1. 10.(14일 이상)

나.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1) 은평구 도시계획과 (☎ 02-351-7423)

2)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02-375-0151)

다. 공람내용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내용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213-20일대(면적: 78,755.2㎡)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증산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안상무)
-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216-2 2층 (증산동)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5) 사업시행인가일 : 2014년 12월 11일

6) 건축계획 : 공동주택 14개동 1,386세대(임대 237세대포함), 지하3층/지상30층 및 부대복리시설

7) 변경내용

○ 사업시행기간 변경(→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65호(2019.11.07.)

○ 건축계획변경에 따른 세대수 증가(증 2세대) 등

8) 기타사항 :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참조

마. 기타사항

1) 주민 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 2019 -1596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의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심사할 지정심사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함.

나. 이에 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운영 규칙안을 제정하여 지정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칙 및 지정 심사기준을 마련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의견청취, 간사, 수당 지급,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마. 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어르신복지과, 전화 : 02-351-7172, FAX 02-351-5656 또는 E-mail : hkjhk@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은평구 홈페이지(http://www.ep.go.kr) ‘공고·고시’에 입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2019. 12. .
제 출 자	주민복지국장

1. 제안이유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의 시행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가 강화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심사할 지정심사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함.

나. 이에 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운영 규칙안을 제정하여 지정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칙 및 지정 심사기준을 마련해 장기요양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심사·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라. 의견청취, 간사, 수당 지급,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제3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항, 제7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②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요양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이력
2.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장기요양요원이 이 법에 따라 받은 행정처분의 내용
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계획
4.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⑥장기요양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1.>[시행일 : 2019. 12. 12.] 제31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해야 한다.

1.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
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기요양기관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

나. 예산조치 : 기획예산과 협의

다. 합　　의 : 위원회 신설규정 관련 기획예산과 협의 완료

- '위원회 조건부 신설 적정' 통보(기획예산과-16254, 2019. 12. 12)

라. 기　　타

1) 제정안 : 별첨
2) 입법예고 : 2019. 12. 26~ 2020. 1. 15.(20일간)
3)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가족정책과-28030, 2019.12.18.)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이상없음(감사담당관-13639, 2019.12.19.)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재가팀 정희경 (전화 7172)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제7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은평구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나. 은평구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자

다. 대학의 노인복지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

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노인복지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 이상 소유자

라.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

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던 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 및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은평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 기준

항목	지정 심사 세부 기준	배점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 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0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제재 처분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 행정처분 경중에 따른 감점 기준 >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 20점 △ 업무정지일이 총 91일~180일인 경우 : 감점 15점 △ 업무정지일이 총 31일~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 업무정지일이 총 3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	20점
	□ 급여제공 이력 : 장기요양기관은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 사유가 행정제재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ex. 현지조사 실시 직후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폐업 또는 매매 등을 통해 처분을 회피한 경우) < 급여제공 이력 감점 기준 > △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 휴폐업 이력이 1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20점
	□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 대표자의 관련 자격증 보유 여부 - 시설장의 관련 기관 운영 이력 및 경력 □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10점

항목	지정 심사 세부 기준	배점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운영규정, 사업계획	
	□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 관련 직원 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연1회 이상) □ 이용자 고충처리 계획 마련 여부	15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시설 현황 등	
	□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및 활용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ex. 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 차입금 사전신고서 상 부채상환 계획의 적정성, 등기부등본, 자산현황서 등 관련 서류 확인	15점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심사자료 : 사업계획, 인력 현황 등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 채용시 종사자 결격사유(범죄경력 여부, 건강검진 등) 확인 방안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기관운영 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계획 마련 (노인학대예방교육, 인권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	15점
기타 심사 기준		
'지역사회 관계성(5점)	□ 지역사회 민원 발생 시 대처 방안 마련 또는 발생 민원 협의 결과 제출	5점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 - 160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의 목적·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로 전환(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음.

○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어 위원회 성격을 비상설로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위원 임기(안 제3조)

○ 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따라 위원 임기는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 전화 : 02-351-6256, Fax : 02-351-5623 또는 E-mail : ina111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ep.go.kr)에 해당 조례의 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9년 월 일 행정안전국장

1. 제안이유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계획(기획예산과-2019. 1. 17.) 및 은평구 위원회 정비계획(기획예산과-2019. 12. 2.)에 따라 위원회의 목적·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로 전환(안 제3조)

○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음.

○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어 위원회 성격을 비상설로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위원 임기(안 제3조)

○ 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따라 위원 임기는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 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 · 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 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 3년간 미개최	⇨	폐지
		· 1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 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독자존속 필요시 통합 후 분과위 편제)
		·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 미개최 · 비효율	⇨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행자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위원회 정비 관련 기획예산과 기획팀과 합의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9. 12월 예정

3) 규제심사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4) 성별영향평가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작성자 : 기획예산과 법무통계팀 김지숙 (전화 6273)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을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① 구청장은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구성) <신 설>	제3조(구성) ①구청장은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과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① ~ ③ (생 략)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 - 160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 하향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목적·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안전관리자문단을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부구청장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 조정 (안 제12조제2항)

○ 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위원회로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한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직급을 하향 정비코자 함.

나.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비상설로 전환(안 제23조제4항)

○ 안전관리자문단은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음.

○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

여 구성·운영하고 있어 위원회 성격을 비상설로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다.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임기(안 제25조)

○ 안전관리자문단 비상설 운영에 따라 위원 임기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기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 전화 : 02-351-6256, Fax : 02-351-5623 또는 E-mail : ina111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ep.go.kr)에 해당 조례의 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9년 월 일 행정안전국장

1. 제안이유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계획(기획예산과-2019. 1. 17.) 및 은평구 위원회 정비계획(기획예산과-2019. 12. 2.)에 따라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 하향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목적·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안전관리자문단을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급을 부구청장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 조정(안 제12조제2항)

○ 실무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을 주요 기능으로 하는 위원회로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한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위원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직급을 하향 정비코자 함.

나.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을 비상설로 전환(안 제23조제4항)

○ 안전관리자문단은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음.

○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어 위원회 성격을 비상설로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다.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임기(안 제25조)

○ 안전관리자문단 비상설 운영에 따라 위원 임기는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기간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관계조례

제12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개정 2017.12.29.)
2. 안전 및 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조정
3. 그 밖에 안전 및 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제23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4조(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주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 3년간 미개최	⇨	폐지
		· 1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 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독자존속 필요시 통합 후 분과위 편제)
		·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 미개최 · 비효율	⇨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행자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나. **예산조치** : 별도비용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9. 12월 예정(20일간)

3) 규제심사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4) 부패영향평가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5)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작성자 : 자치안전과 안전기획팀 김효근 (전화 6312)
자치안전과 재난관리팀 송유진 (전화 63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부구청장”을 “행정안전국장”로 한다.

제2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은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생략)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2조(안전관리실무위원회) ①(현행과 같음) ② ---------- **행정안전국장**----------.
③~⑤(생략)	③~⑤(현행과 같음)
제23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3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25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햇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25조(자문단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23조제4항에 따른 자문단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 - 1603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 하향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직급을 부구청장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 하향(안 제3조제2항)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공동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분야 협력, 협의를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원할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동위원장 직급을 하향정비코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 전화 : 02-351-6256, Fax : 02-351-5623 또는 E-mail : ina111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ep.go.kr)에 해당 조례의 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9년 월 일 행정안전국장

1. 제안이유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계획(기획예산과-2019. 1. 17.) 및 은평구 위원회 정비계획(기획예산과-2019. 12. 2.)에 따라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 하향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의 직급을 부구청장에서 행정안전국장으로 하향(안 제3조제2항)

○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 공동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분야 협력, 협의를 목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원할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공동위원장 직급을 하향정비코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조례

관계법령·조례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중앙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중앙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역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구성)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장으로 한다.
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회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
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비용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9. 12월 예정(20일간)

3) 규제심사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4) 부패영향평가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5)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작성자 : 자치안전과 안전기획팀 김효근 (전화 63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구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안전관리민관 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구성) ①(생략)	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② ---------- 행정안전국장----------.
② ~⑥ (생략)	② ~⑥ (현행과 같음)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 - 1604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의 목적·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로 전환(안 제3조)

○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음.

○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어 위원회 성격을 비상설로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조정(안 제4조제1항)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나, 실무적 회의 개최를 위해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

여 정비

다. 위원 임기(안 제4조제3항)

○ 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따라 위원 임기는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 전화 : 02-351-6256, Fax : 02-351-5623 또는 E-mail : ina111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ep.go.kr)에 해당 조례의 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9. 12. . 재정경제국장

1. 제안이유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계획(기획예산과-2019. 1. 17.)과 은평구 위원회 정비계획(기획예산과-2019. 12. 2.)에 따라 위원회의 목적·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로 전환(안 제3조)

○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없음.

○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어 위원회 성격을 비상설로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조정(안 제4조제1항)

○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나, 실무적 회의 개최를 위해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정비

다. 위원 임기(안 제4조제3항)

○ 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따라 위원 임기는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 조례상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 3년간 미개최	⇨	폐지
		· 1년간 미개최	⇨	위원회 활성화 또는 정비 계획 수립
	비효율 위원회 * 연 3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 기능 유사·중복	⇨	통·폐합 (독자존속 필요시 통합 후 분과위 편제)
		· 기능 독립	⇨	(목적달성) 폐지 (한시필요) 존속기한 설정 (내부안건) 협의체 전환 (존속필요·안건少) 비상설화
법령상 의무설치 위원회		· 미개최 · 비효율	⇨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행자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위원회 정비 관련 기획예산과 기획팀과 합의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2019. 12월 예정

3) 규제심사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4) 성별영향평가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5) 부패영향평가 결과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작성자 :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경제팀 정재훈 (전화 6877)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둔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4조제1항 중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의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설치) ① ---------- 둘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 ----------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 - 160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원회의 목적·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로 전환(안 제3조제4항)

○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는 최근 2년간 1회 개최함 .

○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어 위원회 성격을 비상설로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위원 임기(안 제4조)

○ 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따라 위원 임기는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함.

다.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조정(안 제3조제2항)

○ 물가대책위원회는 폐기물, 정화청소 수수료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므로 실무적 회의 개최를 위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정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 전화 : 02-351-6256, Fax : 02-351-5623 또는 E-mail : ina111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ep.go.kr)에 해당 조례의 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9년 월 일 재정경제국장

1. 개정이유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계획(기획예산과-2019. 1. 17.) 및 은평구 위원회 정비계획(기획예산과-2019. 12. 2.)에 따라 위원회의 목적·기능상 운영은 필요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한 물가대책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여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개정내용

가. 위원회 구성을 비상설로 전환(안 제3조제4항)

○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는 최근 2년간 1회 개최함 .

○ 위원회 개최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어 위원회 성격을 비상설로 명확히 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위원 임기(안 제4조)

○ 위원회 비상설 운영에 따라 위원 임기는 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함.

다.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조정(안 제3조제2항)

○ 물가대책위원회는 폐기물, 정화청소 수수료 등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므로 실무적 회의 개최를 위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정비

3. 참고사항

가. 위원회 정비 방향

< 기본 방향 >

정비 대상				정비 방안
법령상 임의위원회 또는 조례상 위원회	미개최 위원회	3년간미개최	⇨	**폐지 또는 비상설화**
		1~2년간미개최	⇨	**비상설화**
	비효율 위원회 * 연 2회 미만 개최, 구성·운영 개선 필요 위원회 등	유사중복 기능	⇨	**통·폐합** (독자존속 필요시 통합 후 분과위 편제)
		독립 기능	⇨	. 목적달성 : **폐지** . 한시필요 : **존속기한 설정** . 내부안건 : **협의체 전환** .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안건 저조 : **비상설화**
법령상 강행 위원회		. 미개최 . 비효율	⇨	**폐지 또는 임의규정화 검토** (행자부→해당부처, 법령정비 요청)

나. 은평구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위원 위촉 시 고려사항
○ **위원장 및 위원 직급 적정화** -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직급의 위원장, 위원 책정 지양 -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장은 가급적 민간 위원으로 위촉

나. **관계법령** : 없음.

다. **예산조치** : 별도비용 없음

라.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마.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9. 12월 예정(20일간)

3) 규제심사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4) 부패영향평가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5)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4조 제목 중 “ 및 해촉”을 삭제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4항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구성) ①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된다.	② ------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신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제3조제4항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운영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삭제>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삭제>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삭제>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삭제>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 - 1606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로명주소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향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로명주소업무 담당 국장으로 조정(안 제17조제2항)

○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여 도로명주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으나, 실무적 회의개최를 위해 도로명주소업무 담당 국장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 전화 : 02-351-6256, Fax : 02-351-5623 또는 E-mail : ina1110@ep.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ep.go.kr)에 해당 조례의 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안)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9. 12. . 재정경제국장

1. 제안이유

위원회 정비 및 운영 개선 계획(기획예산과-2019. 1. 17.) 및 은평구 위원회 정비계획(기획예산과-2019. 12. 2.)에 따라 따라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로명주소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향하여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도로명주소업무 담당 국장으로 조정(안 제17조제2항)

○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여 도로명주소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였으나, 실무적 회의개최를 위해 도로명주소업무 담당 국장으로 조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조례

관계법령 및 조례

가.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도로명주소위원회)① 도로명의 부여·변경,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를 둔다.<중략>

④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주소안내판 및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등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각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 7. 1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정수는 민간인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9. 7. 18.)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상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개정 2019. 7. 18.)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나. **예산조치** : 별도비용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9. 12월 예정(20일간)
3) 규제심사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4) 부패영향평가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5)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9. 12월 심사요청 예정

작성자 : 지적과 공간정보팀 박상근 (전화 6765)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부구청장”을 “도로명주소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생 략)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도로명주소업무 담당 국장----------. ③ (현행과 같음)

공 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 - 1607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무의 처리와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의 결정절차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문 내용 중 "입안한"을 "입안하는"으로 수정 (안 제2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구청장 임명·위촉 권한을 명시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수를 제한하는 규정 추가, 위원 중 "공무원"을 "은평구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3조)

다.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도시계획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임기 중에도 해촉사유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6조의 3)

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등 관련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근거 마련과 위원회 구성, 운영규정 신설(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련 조문 신설에 따른 운영세칙 조문 이동 및 일부개정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195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 기타문의 : 전화 02-351-7412, 팩스 02-351-5662, 메일 evspring@ep.go.kr

4. 참고사항

가. 이 조례안은 법제심사, 의회심의 및 상급기관 검토과정에서 그 내용이 변경되거나 입안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나.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의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다시 입법예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은평구 홈페이지(입법예고 http://www.ep.go.kr)에 해당 규칙의 개정안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9. . . 도시환경국장

1.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결정사무의 처리와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하여「은평구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의 결정절차를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문 내용 중 “입안한”을 “입안하는”으로 수정 (안 제2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 등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의 구청장 임명·위촉 권한을 명시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수를 제한하는 규정 추가, 위원 중 “공무원”을 “은평구 공무원”으로 변경(안 제3조)

다. 효율적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도시계획위원 해촉 규정을 신설하여 임기 중에도 해촉사유 발생 시 해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안 제6조의 3)

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 등 관련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근거 마련과 위원회 구성, 운영규정 신설(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관련 조문 신설에 따른 운영세칙 조문 이동 및 일부개정 (안 제1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3. 7. 16., 2017. 4. 18.>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12조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②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 4. 10., 2014. 1. 14.>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

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②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5. 1. 15., 2008. 1. 8.>

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제63조 및 제68조

제63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② 제68조제1항에 따른 권한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치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2.>
제68조(권한의 위임) ①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4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 7. 30.>
② 제1항의 위임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한 것으로 본다.

4)「양성평등기본법 」 제21조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12.26. ~ 2020.1.15.)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감사담당관 경유

4) 성별영향분석 : 가족정책과 경유

작성자 : 도시계획과 지구단위계획팀 류승춘 (전화 7412)

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 앞에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를 삽입한다.

제2조제3호 중 “입안한”을 “입안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구청장이 되고”를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무원”을 “은평구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6조의2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위반이나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제12조 앞에 “제3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2조를 제15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로 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관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1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은평구 건축위원회 위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로,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신 설>	제2장 도시계획위원회
제2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법 제113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구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3. ---------- 입안하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이하 “구의회 의원”이라 한다)과 공무원 및 토지이용, 건축, 주택, 경관, 교통, 환경, 방재, 문화, 정보통신 등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③ ---------- 은평구 공무원 ----------

위촉하되,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
<신 설> ④ (생 략) <신 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6조의3(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에 대한 자격을 상실한 때 4.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때 5. 위원이 제6조의2에 해당됨에

	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 온 경우 ② 위원이 각종 범죄 또는 법률 위반이나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촉된 경우 재위촉할 수 없다.
<신 설>	제3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신 설>	제12조(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30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6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관 사항 중 구청장에게 위임 된 사항에 대한 심의 2. 관계 법령에서 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신 설>	제1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

	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은평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2. 은평구 건축위원회 위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 설>	제14조(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

	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로, "도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운영세칙) ---------- 구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